

##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



### >>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?

주택 임대차 계약(신규·갱신, 변경, 해제)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
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,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

#### 신고유형

- ① 신규·갱신신고 : 모든 신규 계약 +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
※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(묵시적 갱신 등)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
- ② 변경신고 :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
- ③ 해제신고 :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

### >>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

#### 신고의무

- 임대인 +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(위임신고 가능)  
※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
#### 신고주택

- ① 단독 · 다가구, ② 아파트 · 연립 · 다세대, ③ 주거용 오피스텔, ④ 기숙사 · 고시원,  
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

#### 신고지역

- 수도권(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,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 
제주특별자치도

#### 신고금액

-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

#### 과태료

- 미신고(지연사례 포함)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※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

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! 주택 임대차 계약 꼭! 신고하세요

## 주택 임대차 계약 Q&A



Q. 김해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?

A.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**수도권(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, 경기도), 광역시, 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**이며,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.  
**상기 주택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**

Q. 김해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,000만원 및 월세 40만원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?

A.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  
**상기 주택은 김해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**

Q. 보증금 및 월세가 변경되어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
A.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.

##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



#### 공동 신고

행위 주체	행위	비고
임대인 + 임차인	신고	계약서 첨부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접수	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승인 + 확정일자	

#### 단독 신고 (계약서 첨부)

임차인	신고	계약서 첨부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접수	문자 안내 (임대인)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승인 + 확정일자	문자 안내 (임대인)

#### 단독 신고 (계약서 미첨부)

임차인	신고	계약서 없음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접수	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임대인 통보	문자 안내 (임대인)
임대인	신고	
행정복지센터 (공무원)	승인	문자 안내 (임차인)

★ 오프라인 신고 → 공무원 입력, 온라인 신고 → 신고인 입력

##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.

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 
확정일자를 한번에 해결하세요!



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